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5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	●●●
기 타	◆◆◆

2. 조치내용

□ 과징금 부과 : ●●●, ◆◆◆

○ ●●● : 과징금 1,038,800,000원

○ ◆◆◆ : 과징금 39,400,000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●●●은 前 ㈜☆☆☆☆☆ 재무팀 공시담당자로서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*를 직무상 지득한 '24.10.14. 14:13부터 해당 정보가 공개된 '24.12.20. 15:18까지의 기간 동안,

* ☆☆☆☆☆와 ★★★★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

-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모친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㈜☆☆☆☆☆ 주식 94,61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,

- 부친 ◆◆◆에게 '24.11.20.경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공개 전까지 5,033주를 매수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○ ◆◆◆은 ●●●으로부터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'24.11.20.경 전달받아, '24.11.25.경부터 해당 정보가 공개된 '24.12.20. 15:18경까지의 기간 동안,

-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㈜☆☆☆☆☆ 주식 5,0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29조의2 제1항 제2호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0조 제1항 제1호

□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별표 2(과징금 부과기준)